



제 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6597호)

2025. 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전오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안 제11조 등)	2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정 부

나. 제 출 일 : 2024. 12. 17.

다. 회 부 일 : 2024. 12.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는 국가도서관 위원회의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 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에 포함되던 것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위원이 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 등 (안 제11조 등)

가. 개정안 요지

-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둔(안 제11조)
- 국가도서관위원회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의 체제에서 2명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전환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에 포함되던 것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위원에 포함되도록 함(안 12조 등).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①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하여 <u>대통령</u> 소속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둔다.	제11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① ----- ----- ----- <u>문화체육관광부장관</u>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u>위원장</u> 은 사무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④ <u>제12조제2항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의 공동위원장</u> (이하

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생략)

제12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① 국가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서관과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도서관 또는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

“공동위원장”이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① ----- 공동위원장 2명-----

-----.

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사람 1명

③ -----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

----- 문화

<u>장이</u> 위촉하는 사람 ④ <u>위원장은</u>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⑤ <u>위원장은</u>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u>위원장</u>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⑧ (생략) 제13조(위원의 해촉) <u>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u> 제12조제3항제2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14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u>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u>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략)	<u>체육관광부장관이</u> 성별을 고려하여 -- ⑤ <u>공동위원장</u>----- -----. ④ <u>공동위원장은</u> 각자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대표하고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u>제2항제2호에</u> 따른 <u>공동위원장</u> ----- -----. ⑦·⑧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의 해촉) <u>문화체육관광부장관</u>----- ----- ----- -----. 1. ~ 4. (현행과 같음) 제14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 <u>위원장(제12조제2항제1호에</u> 따른 <u>공동위원장을</u> 말한다. 이하 제15조 및 제54조에서 같다)----- -----. ② (현행과 같음)
--	--

다. 검토사항

○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도서관법」 제11조¹⁾에 따라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한 행정위원회로, 2007년 「도서관법」 개정과 함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로 설치되었고 2022년부터 국가도서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음.

○ 현행법²⁾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
- 1) 「도서관법」 제11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①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한다.
1. 제14조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관련 제도 및 운영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및 도서관자료의 접근·이용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서관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고,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기획단을 둔다.
④ 위원장은 사무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기획단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도서관법」 제12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① 국가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서관과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도서관 또는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결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⑧ 그 밖에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서관법 시행령」 제6조(도서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등) ①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과 도서관이나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촉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부위원장이 됨.

- 동 위원회는 2024년 8기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 중이며, 최근 3년간(‘22~’24년) 3회의 본회의와 18회의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음.

○ 안 제5조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공동위원장 체제로 전환하며 위원회 구성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도서관 정책의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로 위원회의 소속을 변경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정책 연계 및 실행력 확보를 제고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계 확립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참고로, 2022년 정부는 부실하게 운영되는 위원회를 폐지하고,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며, 비상설 협의체로 기능 수행이 가능한 위원회는 비상설 협의체로 대체하는 “정부위원회 정비 방안”을 발표·확정³⁾하여, 법률 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를 일괄 정비하는 내용의 법률안⁴⁾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3) 2022년 발표된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① 1년 이상 구성되지 않은 장기간 미구성 위원회, ② 연평균 본회의 개최 실적 1회 미만으로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③ 민간위원이 위촉되지 않았거나 2인 이하인 위원회, ④ 설치목적 달성 및 행정여건 변화 등으로 존속 필요성이 적은 위원회, ⑤ 단순 자문 성격의 위원회를 폐지 대상으로 선정하고, 설치목적·기능·심의대상이 유사한 유사·중복 위원회의 통합을 추진하였음.

- 동 일괄개정법률안은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공동위원장 체제로 전환하는 「도서관법」 개정이 포함되었으나 제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폐기되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한국도서관협회의 25개 학·협회 단체의 반대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과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봄.

○ 먼저, 「도서관법」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두고 문체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서관 정책이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다양한 부처 간의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는 점과 2006년 정부가 도서관 관련 정책의 조정·협
의의 필요성에 따라 도서관정책위원회의 설립을 추진하여 2007
년 입법이 이루어졌음을 고려할 때,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할 경우 부처 간의 협력·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
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참고로, 2007년 「도서관법」 개정 당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이나 문화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하려던 의

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제출, 2022.9.30. 발의, 의안번호 제2117676호

견에도 불구하고, 10개 부처에 분산된 도서관 정책에 대한 조정·조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수정 의결된 바가 있음⁵⁾.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도서관 정책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여 책임행정체계를 확립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반면, **한국도서관협회**를 포함한 도서관 정책 관련 25개 학·협회·단체⁶⁾는 국가의 도서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소속 변경 시 도서관 정책의 중요성이 간과될 우려가 있고, 관할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는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역할이 약화될 수 있어 현행 소속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79

5) 제259회국회(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 2006.4.19.

6) (사)한국도서관협회, 공공도서관협의회,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부산·울산·경남지구협의회, 서울·인천·경기지구협의회,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서교사위원회,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 전국전문대학문헌정보학교육협의회,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사)포럼 문화와도서관,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한국도서관사연구회, 한국독서교육연구학회,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사)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 한국신학대학교도서관협의회, (사)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사)한국작은도서관협회, 한국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사)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참 고

국가도서관위원회 운영 실적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총 21회)

(단위 : 개최 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2년	7	1	-	1	6	6	-
2023년	-	-	-	-	-	-	-
2024년	14	2	1	1	12	11	1

* 2023년은 위원회 미구성으로 회의 개최 실적 없음

[참고 : 최근 3년간 국가도서관위원회 회차별 안건]

구 분	일 시	안 건
9차 (7기 위원회)	'22.3.23.(서면)	·(안건1/보고) 2022년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사무국 업무계획 ·(안건2/보고) 2022년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정책연구 ·(안건2/보고) 도서관계 남북교류 추진계획안
1차 (8기 위원회)	'24.5.29.	·(안건1/보고) 2025년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지침 ·(안건2/보고) 제8기 국가도서관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안건1/심의)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안) ·(안건1/심의) 국가도서관위원회 관리 예규 개정(안)
2차 (8기 위원회)	'24.8.28.(서면)	·(안건/보고) 2025년 도서관의 날·도서관주간 운영계획(안) ·(안건1/심의)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5년 시행계획 수립자침(안) ·(안건1/심의)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추진실적 평가계획(안)

* '22년 분과위원회 회의 6건 및 '24년 분과위원회 회의 12건 제외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22년	1,603,275	164,000	344,275	1,095,000	1,173,000	114,898	193,547	864,555
2023년	1,666,504	184,000	362,504	1,120,000	1,321,000	-	218,000	1,103,000
2024년	1,517,395	164,000	337,073	1,016,322	1,236,667	83,307	57,737	1,095,623